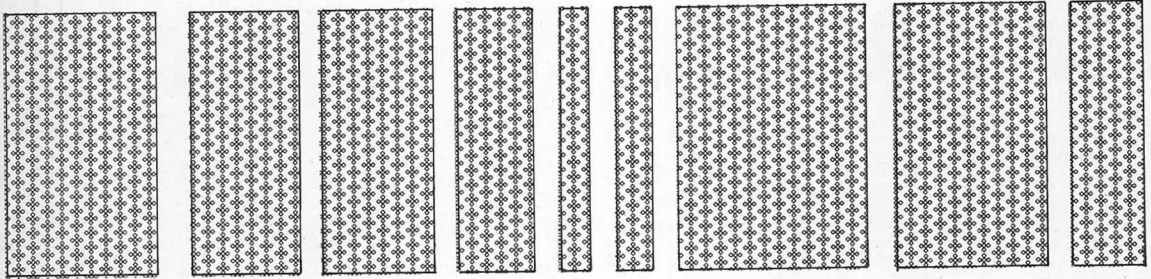


농수산부 영국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수입 위생조건 고시



농수산부는 6월 11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영국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 위생조건을 고시했다.

I. 우제류 동물 위생조건

한국으로 수출되는 소, 돼지, 산양, 면양(이하 "수출동물"이라 함)의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영국내 구제역, 우역, 우폐역, 수포성 구내염, 펌프 스킨병, 부루팅, 아프리카 돈콜레라, 텃센병, 트리파노소마, 아나푸라즈마, 파이로푸라즈마, 양두의 발생사실이 없어야 한다.
2. 출생이래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3. 수출동물은 선적전 30~60일 사이에 별첨의 결핵병, 요네병에 대하여 격리 검사되고 이상이 없어야 한다.
4. 수출동물은 선적전 최소한 15일 이상(단 항공기 수송시는 30일간 이상) 수출검역 시설에서 정부 검역관에 의거 별첨 질병에 대한 제류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 이상이 없고 건강한 동물이어야 한다.
5. 부루세라병에 대하여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

은 소이어야 한다.

6. 돼지는 생산 및 사육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20km이내의 지역에서 수출 검역전 2년 이내에 돈수포병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7. 생산농장, 수출검역 시설, 선적 탑 재간의 동물 수송에 사용된 수송함, 차량, 선박과 항공기는 영국정부가 인정한 소독액으로 소독하고 검역되지 않은 것과 혼좌하여서는 아니된다.
8. 수출동물은 선적지에서 한국까지 운송중 한국이 지정하고 있는 수입금지 지역을 경유하여서는 아니된다.
9. 수출검역 및 한국까지 수송중 급여되는 건조, 깔짚, 사료 등은 당해 동물이 생산된 지역의 것이어야 하고 위생적이어야 하며 기항지로 부터 구입하여서는 아니된다.
10. 영국 정부는 동국의 전염병 발생상황을 발생월보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한국정부 기관에 통보하고 만일 동국에 구제역, 우역, 우폐역, 아프리카 돈콜레라, 또는 그 유사 환축의 발생이 있었을 경우에는 즉시 한국에의 수

농수산부고시

출을 중지하는 동시에 한국정부 기관 앞으로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1. 영국 정부는 다음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검역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가. 1~9항의 조건이행사실 증명

나. 수출동물의 개체번호, 성별, 나이

다. 별표에 명시된 각질병의 검사일자, 방법 및 그 성적

라. 백신 접종시 그 종류 및 접종 년월일

마. 수출동물 생산 농장의 명칭 및 주소

바. 수출검역 시설의 명칭 및 주소

사. 수출검역의 개시 및 종료일자

12. 생축의 수입은 부산항에 한한다.

II. 우제류 동물의 축산물 위생조건

한국으로 수출되는 우제류 동물의 육류 및 기타 생산물의 수입 위생조건은 우제류 동물의 위생조건중 제1항에 명시된 전염병의 발생이 없는 것으로 다음과 같다.

1. 수출육을 생산하기 위하여 도살된 동물은 영국내에서 생산 사육되어진 것이어야 하며, 출생후 구제역 백신접종을 맞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 수출육을 생산하기 위하여 도살한 동물은 영국정부 수의사가 행한 생체 및 해체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3. 수출육은 영국 정부 당국이 한국에 수출하기 위하여 지정 시설되고 한국 정부에 사전 통보된 도축장 및 식육 가공장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4. 수출육은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은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수출육의 포장은 청결하고 위생적인 용기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5. 수출육은 영국에서 출발하여 한국에 도착

시까지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는 방법으로 저장 수송되어야 한다.

6. 한국에 수출하기 위하여 수송하는 선박이나 컨테이너의 냉동(냉장)실은 영국정부 당국이 출국시에 봉인을 하여야 한다(이 봉인의 양식은 사전에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7. 육골분, 육분, 골분, 우모분 기타 생산물은 습열의 경우 115°C 1시간 이상 또는 동등의 열처리방법, 건열의 경우 140°C에서 3시간 이상 또는 동등의 열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8. 피류(생피, 염장피, 산적피)는 2%황산나트륨에 의한 대상물 전면 산포 또는 침적, 단전피는 호르마린 가스 소독한 것이어야 한다.

9. 영국 정부 당국은 영국내 가축전염병의 발생상황을 발생 원보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한국정부기관에 통보하고 만일 동국에 구제역, 우역, 우폐역, 아프리카 돈콜레라, 또는 그 유사 환축의 발생이 있었을 경우에는 즉시 수출을 중단하고 발생과 관련된 사항을 한국정부 당국에게 상세히 통보하여야 한다.

10. 영국정부 당국은 검사증명서의 발행시 다음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상기 1~5항 및 7,8항의 각사항과 전염병 발생 사실

2) 도축장의 명칭, 주소 및 승인번호(생육에 한함) 또는 식육가공장의 승인번호

3) 수출육을 생산하기 위해 도살된 동물의 도축년월일(생육에 한함)

4) 수출검사증명서 발행년월일 및 발행장소

5) 컨테이너 등에 부착한 봉인지의 번호(이 봉인지는 상기 6항의 규정에 관련하여 한국정부 당국이 승인한 것이어야 한다).

농수산부고시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1984. 7. 1부터 시행한다.

별 칙

1. 수출우

질 병 명	검사방법 및 기준
구제역 (Foot and Mouth Disease)	푸로방시험 및 중화시험 : 음성
결핵병 (Tuberculosis)	튜버큐린 피내 반응검사 : 음성
존씨병 (Johne's Disease)	요녕 피내 반응검사 또는 보체결합 반응검사 : 음성
브루셀라병 (Brucellosis)	시험관응집 반응검사 : 40 μ /ml에서 음성
소바이러스성 설사 (Bovine Virus Diarrhea)	중화시험 : 1 : 8에서 음성
렙토스피라라병 (Leptospirosis) (L. Canicola, pomona, icterohaemorrhage, tarassovi)	응집용균 반응 : 1 : 100에서 음성
비브리오병 (Vibriosis)	포피강 세척액이나 질점액의 세균 배양검사 : 음성
트리코모나스 (Trichomonas)	포피강 세척액이나 질점액의 현미경검사 : 음성
Wable Infestation	유효한 약제 산포 등을 수출 검역 시설에서 실시 (단, 투약 적기가 아닐 때는 그 취지 기입).
소백혈병 (Enzootic Bovine Leukosis)	AGID 시험 또는 영국정부에서 실시하는 방법 : 음성 (과거 2년간 영국내 비발생 증명도 무방)
소 전염성 비기관염 (Infectious Bovine Rhinotracheitis)	혈청 중화시험 : 1 : 2 에서 음성
기타 영국정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염성 질병	임상검사 또는 영국정부에서 실시하는 검사 : 음성

2. 수출돈

질 병 명	검사방법 및 기준
구제역 (Foot and Mouth Disease)	중화반응 검사 : 음성
돼지수포병 (Swine Vesicular Disease)	중화시험 : 음성
결핵병 (Tuberculosis)	튜버큐린피내 반응검사 : 음성
브루셀라병 (Brucellosis)	시험관 응집반응검사 : 40 μ /ml에서 음성
오제스키병 (가성광견병) (Aujeszky's Disease)	중화시험 또는 ELISA 시험 : 음성
렙토스피라라병 (Leptospirosis)	응집용균 반응검사 : 1 : 100 에서 음성
돼지콜레라 (Hog Cholera)	
톡소플라즈마병 (Toxoplasmosis)	
유행성 폐염 (Enzootic Pneumonia)	임상검사 또는 영국정부에서 실시하는 검사결과 음성
돼지단독 (Swine Erysipelas)	
전염성 위장염 (Transmissible Gastroenteritis)	
기타 영국정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염성 질병	

3. 수출면양 및 산양

질 병 명	검사방법 및 기준
구제역 (Foot and Mouth Disease)	중화시험 : 음성
결핵병 (Tuberculosis)	튜버큐린 피내반응검사 : 음성
존씨병 (Johne's Disease)	요녕 피내 반응검사 또는 보체결합 반응검사 : 음성
브루셀라병 (Brucellosis)	시험관 응집 반응검사 : 40 μ /ml에서 음성
이질 (Scrapie)	
농포성피부염 (Pustular Dermatitis)	임상검사 및 수출전 12개월 동안 생산지 농장에서 비발생 증명
비브리오병 (Vibriosis)	생 증명
기타 영국정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염성 질병	임상검사 또는 영국정부에서 실시하는 검사결과 : 음성